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02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1777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redacted]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redacted]

변 론 종 결 2019. 3. 13.

판 결 선 고 2019. 4. 3.

주 문

1. 피고가 2018. 5. 1. 원고에게 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02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법인의 주식 취득

1) 원고는 2012. 1. 3. 설립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이다.

2) 원고는 2012. 6. 29. 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B'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의 29.01%를 취득하였고, 2013. 3. 5. 나머지 지분인 70.99%를 모두 취득하여 B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함으로써, 원고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B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게 되어 B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나. 원고의 취득세 등 납부

구 지방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2013. 4. 29. 피고에게 B의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13. 5. 6. 취득세 185,142,170원, 농어촌특별세 18,514,21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의 1차 경정청구 및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1) 원고는 2014. 10. 2. 피고에게 원고가 B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지주회사가 됨과 동시에 구 지방세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02

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원고가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청구'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 27. 원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3호의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사유로 하여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2015년 2월경 피고의 2014. 11. 27.자 경정청구거부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redacted]도지사는 2015. 5. 8.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같은 해 5. 11.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의 2차 경정청구 및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1) 원고는 2018. 4. 26. 피고에게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59713 판결을 인용하면서 원고가 B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지주회사가 됨과 동시에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원고가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청구'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5. 1. 원고에게 '전라북도 세정과-5330(2015. 5. 11.) 지방세 이의신청 결정통지-이의신청 기각으로 결정 통지된바, 이후 새로운 판례에 근거하여 경정할 이유 없음'을 사유로 하여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처분'이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0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2015. 5. 11.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은 후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아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이 사건 1차 처분 및 위 기각 결정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2차 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100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항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이와 같은 부적법한 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인 피고가 그 경정청구를 거절하는 통지는 법적 의무 없는 사실의 통지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의무자에게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하나의 불복절차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송경제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02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지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고, 당초의 신고 등에 관한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도중에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이 있다고 하여 납세자가 당초의 신고 등에 관하여 가지는 별개의 불복수단인 경정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도 불합리하며,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전 규정의 입법목적은 새로이 증가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경정청구권의 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지방세기본법의 규정과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및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더라도 5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경정청구기간이 이의신청 등 기간으로 제한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부분만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거부처분은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 소송의 제기기간은 각 처분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종전 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이 도과했다 하여 그 이후의 새로운 거부 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 1998. 3. 13. 선고 96누15251 판결,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02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1차 처분 및 전라북도지사의 이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이 모두 경과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취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5.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2차 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2차 처분에 대하여 그 위법을 주장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2차 처분은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3호(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는 '지주회사가 이미 자회사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주회사가 자회사가 아닌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주회사인 원고가 자회사가 아닌 B의 지분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B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피고의 이 사건 2차 처분은 이 사건 감면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감면조항은 ①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다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02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와 ② '지주회사가 기존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지배력을 강화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미 지주회사인 상태에서 B의 지분을 취득한 것이므로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B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B이 자회사가 된 것이므로 위 ②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감면조항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 사건 감면조항의 입법취지는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소유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78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미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설립 내지는 전환되었더라도 국내 회사를 자회사로 새로이 편입하여 그 국내 회사에 대한 지주회사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와 마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02

가지로 여전히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반 지주회사가 사업내용을 지배할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를 자회사로 새로이 편입하기 위하여 해당 국내 회사의 주식을 일시에 취득함으로써 지주회사 및 과점주주가 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감면조항의 문언과 아울러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혜택의 취지 및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유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미 공정거래법에 따라 설립 내지는 전환된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일시에 취득함으로써 그 국내 회사를 자회사로 새로 편입하여 그 국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주회사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59713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2. 1. 3. 설립된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인 사실, 원고는 2012. 6. 29. B의 발행주식의 29.01%를 취득하였고, 2013. 3. 5. 나머지 지분인 70.99%를 모두 취득하여 B을 자회사로 편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공정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지주회사인 원고가 B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B를 자회사로 새로 편입하였더라도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된다.

3)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2차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2차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02

재판장 판사 김수일

판사 황윤정

판사 김범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02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 구 지방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02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⑥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끝.